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2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년 5월 25일
4.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II . 제안이유

-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생활 안전망 구축을 기본으로 AI기반 융합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수업환경 구축 및 학습 공간 환경개선, 교육·생활 격차 최소화를 위한 탄탄한 지원 등 주요 사업 및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III.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 (A-B)	비율	
총 규 모					10,849,194	100	9,741,994	1,107,200	11.4	
세입	중이	양전	정수	부입	5,972,924	55.0	5,748,655	224,269	3.9	
	자이	치전	단수	채입	4,406,215	40.6	3,605,550	800,665	22.2	
	기	타	이	전 수 입	16,257	0.1	8,967	7,290	81.3	
	자	체	수	입	127,489	1.3	98,218	29,271	29.8	
	지	방	교	육 채	0	0.0	0	0	0.0	
	순	잉	세	여 계	금	326,309	3.0	280,604	45,705	16.3
세출	인	건	비		6,375,273	58.7	6,323,785	51,488	0.8	
	기	관	운	영 비	31,485	0.3	29,923	1,562	5.2	
	학	교	운	영 비	872,343	8.1	875,518	△3,175	△0.4	
	교	육	사	업 비	2,271,132	20.9	1,867,759	403,373	21.6	
	시	설	사	업 비	822,312	7.6	517,413	304,899	58.9	
	지	방	교	육	채	372,453	3.4	117,531	254,922	216.9
	B	T	L	상	환					
예	비	비	및	기	104,196	1.0	10,065	94,131	935.2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0,849,194	100.0	9,741,994	1,107,200	11.4	785,608	37,366	284,226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 통 교 부 금	5,048,788	46.5	4,933,216	115,572	2.3	115,572			
	특 별 교 부 금	139,221	1.3	79,920	59,301	74.2		△794	60,095	
	증 액 교 부 금	176,710	1.6	176,710	0	0.0				
	국 고 보 조 금	33,127	0.3	21,218	11,909	56.1			11,909	
	특별회계전입금	575,078	5.3	537,591	37,487	7.0		37,487		
	계	5,972,924	55.0	5,748,655	224,269	3.9	115,572	36,693	72,004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법 정	지 방 교 육 세	1,968,541	18.0	1,730,527	238,014	13.8	238,014		
		담 배 소 비 세	279,450	2.6	261,068	18,382	7.0	18,382		
		시 도 세	1,772,211	16.3	1,431,797	340,414	23.8	340,414		
		학 교 용 지 부 담 금	7,386	0.1	7,386	0	0.0	0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104,168	1.0	105,918	△1,750	△1.7	△1,750		
		교 육 급 여 보 조 금	8,411	0.1	8,411	0	0.0	0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6,567	0.2	16,567	0	0.0	0		
		소 계	4,156,734	38.3	3,561,674	595,060	16.7	595,060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165,012	1.5	42,276	122,736	290.3		△2,100	124,836
		기초자치단체	84,469	0.8	1,600	82,869	5,179.3			82,869
		소 계	249,481	2.3	43,876	205,605	468.6	0	△2,100	207,705
	계	4,406,215	40.6	3,605,550	800,665	22.2	595,060	△2,100	207,705	
	기타이전수입(지원금)	16,257	0.1	8,967	7,290	81.3		2,773	4,517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412	0.1	2,141	△729	△34	△729		
행 정 활 동 수 입		4,901	0.1	4,901	0	0.0				
자 산 수 입		11,892	0.1	11,892	0	0.0				
이 자 수 입		7,692	0.1	7,692	0	0.0				
금 융 자 산 회 수		19,191	0.2	19,191	0	0.0				
기 타 수 입		82,401	0.7	52,401	30,000	57.3	30,000			
계		127,489	1.3	98,218	29,271	29.8	29,271			
지 방 교 육 채		0.0								
전 년 도 이 월 금	326,309	3.0	280,604	45,705	16.3	45,705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0,849,194	100.0	9,741,994	1,107,200	11.4	785,608	37,366	284,226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342,430	40.0	4,336,640	5,790	0.1	5,790	0	0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739,496	6.8	692,763	46,733	6.7	46,733	0	0	
	사립학교인건비	1,293,347	11.9	1,294,382	△1,035	△0.1	△1,035	0	0	
	인건비 계	6,375,273	58.7	6,323,785	51,488	0.8	51,488	0	0	
경상비	기관운영비	31,485	0.3	29,923	1,562	5.2	1,562	0	0	
	학교 운영비	공립	676,623	6.3	675,354	1,269	0.2	1,269	0	0
		사립	195,720	1.8	200,164	△4,444	△2.2	△4,444	0	0
		소계	872,343	8.1	875,518	△3,175	△0.4	△3,175	0	0
	경상비 계	903,828	8.4	905,441	△1,613	△0.2	△1,613	0	0	
사업비	교육사업비	2,271,132	20.9	1,867,759	403,373	21.6	127,390	36,696	239,287	
	시설 사업비	학교시설	155,768	1.5	108,453	47,315	43.6	44,545	2,770	0
		일반시설	597,266	5.5	351,874	245,392	69.7	205,612	△2,100	41,880
		급식시설	69,278	0.6	57,086	12,192	21.4	9,937	0	2,255
		소계	822,312	7.6	517,413	304,899	58.9	260,094	670	44,135
	사업비 계	3,093,444	28.5	2,385,172	708,272	29.7	387,484	37,366	283,422	
지방채 및 BTL 상환	지방교육채	269,723	2.5	15,605	254,118	1,628.4	254,118	0	0	
	BTL 상환	102,730	0.9	101,926	804	0.8	0	0	804	
	지방채 및 BTL 계	372,453	3.4	117,531	254,922	216.9	254,118	0	804	
예비비 및 기타		104,196	1.0	10,065	94,131	935.2	94,131	0	0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29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²⁾ 따라 기정예산 9조 7,419억 9천 4백만원 대비 11.4%에 해당하는 1조 1,072억원이 증액된 10조 8,491억 9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고, 202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조 1,072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최근 4년간(2017~2020년) 추가경정예산의 본예산 대비 연평균 증가율 11.49%(1조 311억 7천 5백만원)과 비슷한 규모라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표1] 2017~2020 추경 규모, 본예산 대비 증감액과 증감률

(단위 : 백만원)

연도	추경 예산(안)액 (A)	기정 예산액 (B)	비교증감					증액률 (C/B)
			계 (C=A-B=D+E)	일반재원(D)		목적지정(E)		
				일반재원	지방교육채	추경	우선확정	
2020	10,556,352	10,084,661	471,691	69,797	0	119,040	282,854	4.70%
2019	11,005,898	9,380,315	1,625,583	1,393,822	0	11,737	220,024	17.30%
2018	9,885,510	9,151,267	734,243	540,378	0	24,058	169,807	8.02%
2017	9,440,868	8,147,725	1,293,143	1,121,871	0	19,522	151,750	15.87%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242억 6천 9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06억 6천 5백만원, 자체수입 292억 7천 1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 457억 5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 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16pp)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 2,242억 6천 9백만원과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등 법정이전수입 5,950억 6천만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 2,056억 4백만원, 기타이전수입 72억 9천만원 등 기정예산 보다 총 1조 322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303, 2021.2.24.)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592, 2020.4.14.), 그리고 제1, 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증가로 기정예

산보다 1,748억 7천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 특별교부금은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 등 7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수요 42개 사업(177억 8천 2백만원), 제1, 2차 지역교육현안수요 14개 사업(285억 9천 7백만원) 그리고 재해대책수요 1개 사업에(129억 2천 2백만원) 대해 593억 1백만원이 목적지정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³⁾

[표-1] 특별교부금 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사업명	추경편성 (교부액)	기정예산	증감액
합 계 (6건)			6,297	7,091	△794
특별교부금	교육복지우선지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꿈사다리장학제도(특별교부금)	350	369	△19
	특색교육과정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1,760	1,960	△200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학교간공동교육과정운영 활성화(특별교부금)	833	933	△100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 (특별교부금)	3,131	3,478	△347
	학력평가관리	취업지원센터운영	190	207	△17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특별교부금)	33	144	△111

- 다음으로 중앙정부가전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온라인튜터(91억 4천 7백만원), 에코스쿨조성(13억원), 특수학교(급)방역등지원(12억 3백만원) 등 총 119억 9백만원이 우선확정 사업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표-2] 세입 자원별 우선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BTL상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8	284,226	68	239,287	28	44,135	2	804
국고보조금	9	11,909	9	11,909				

3)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 내역은 [붙임1] 참고.

특 별 교 부 금	51	60,095	37	31,498	14	28,597		
광역자치단체지원금	23	124,836	9	109,298	14	15,538		
기초자치단체지원금	11	82,869	9	82,065			2	804
기 타 지 원 금	1	706	1	706				
전 입 금	3	3,811	3	3,811				

-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과4) 「2021년 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90. 2020.1.14.)에 따라 누리과정지원금(유아교육비) 산출액 이 변동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74억 8천 6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나) 자치단체이전수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5,950억 6 천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5) 따른 시도세전입금, 담 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지방세법」 제69조6) 및 제71조와7)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임.

5)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6)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7)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⁸⁾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사업 전환에 따른 교부금 보전분 중 시·도교육청 안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은 ‘꿈을담은교실만들기’ 사업이 기정예산(58억원)보다 21억원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지원(서울시분: 1,075억 5천만원/자치구분: 716억 9천 6백만원)과 입학준비금지원(서울시분: 3억 6천 4백만원/자치구분: 88억 2천 6백만원) 등의 증가로 2,056억 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8)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p>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p> <p>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p> <p>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p> <p>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p> <p>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p>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각 시·군·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다) 기타이전수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은 「2021년 국·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KB금융그룹 기부금 지원금 확정 안내」에(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132, 2021.1.7.) 따른 병설유치원 신·증설 시설비 27억 7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표-3] 기부금으로 추진되는 병설유치원 신·증설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학교명	추경편성액
1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신현초병설유	70,000
2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금화초병설유	200,000
3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소의초병설유	70,000
4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영동초병설유	120,000
5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대길초병설유	210,000
6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선유초병설유	210,000
7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가인초병설유	140,000
8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공연초병설유	210,000
9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상원초병설유	140,000
10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월천초병설유	140,000
11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태릉초병설유	140,000
12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강신초병설유	280,000
13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양목초병설유	80,000
14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장수초병설유	80,000
15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신곡초병설유	350,000
16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양동초병설유	50,000
17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수송초병설유	280,000
계				2,770,000

그리고 「2021년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예산 교부」(한국과학창의재단 소프트웨어에이아이융합팀-440, 2021.1.28., 2017.7.29.)에 따른 AI교육선도학교운영비 7억 6백만원과 「국가평생교육원 2021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888, 2021.3.31.)에 따른 검정고시프로그램운영지원비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그 밖에 기타이전수입 중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시·도분담금 1억 3천 5백만원과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에 따른 분담금 36억 7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25pp)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수입은 292억 7천 1백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대면식 수련교육의 중지와 평생학습관의 장기휴관에 따른 문화강좌 축소 등에 따라 7억 2천 9백만원이 감액편성 되고,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지난해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이 300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표-4] 자체수입 수납액(3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A)	수납액(B)	A-B
자체수입	98,218,246	129,113,168	30,894,922

- 다만 동 300억원의 경우 [표-4]와 같이 자체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08억 9천 5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그 차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표-4]에서 알 수 있듯 회계연도 중 학교회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납되는 금액의 일부만을 반영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⁹⁾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

9)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모두 예산에 편입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주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세입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전년도(2020년도) 결산 완료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보다 457억 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¹⁰⁾ 따라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¹¹⁾

[표-5] 2016~2020년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본예산(A)	319,104	311,863	506,772	671,796	523,349
추경예산(B)	319,104	505,441	515,188	769,861	381,143
추경증감(B-A)	0	193,578	8,416	98,065	-142,206

[표-5]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4,981억 4천 7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

10)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11)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였는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기정예산보다 연평균 394억 6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연평균 증가액과 비교하여 115.8%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규모면에서 지난 5년간 평균치의 약 65.5% 수준인 3,263억 9백만원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거나 세출예산의 불용이 발생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바,

교육청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임의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1) 세출예산 규모와 구조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조 1,072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중 사업별 우선확정 사용분 2,842억 2천 6백만원과 예산성립 후 집행할 목적지정지원금 373억 6천 6백만원, 그리고 지방교육채 상환의 2,541억 1천 8백만원과 예비비 941억 3천 1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사업별 가용재원은 세출 총 증가액의 39.5%인 4,375억 5천 9백만원이라 하겠습니다.
- 이러한 가용재원의 세출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사립학교인건비가 10억 3천 5백만원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원¹²⁾ 및 계약제교직원 인건비가 467억 3천 3백만원 증가하는 등 총 514억 8천 8백만원이

12) 2020년 집단임금협약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붙임2] 참고.

증액편성 되었고,

기관운영비 등의 경상비는 기관운영비와 공립학교운영비가 각각 15억 6천 2백만원 및 12억 6천 9백만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운영비가 44억 4천 4백만원 감액되어 16억 1천 3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원 사업비의 경우 교육사업비가 1,273억 9천만원, 시설사업비가 2,600억 9천 4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다만, 교육사업비의 경우 1,273억 9천만원 중 ‘AI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블렌디드수업 및 교사연수모형개발’ 600억 8천 3백만원, 학교무선환경구축(AP) 348억 1백만원, ‘학생스마트기기보급’ 206억 7천 7백만원 등에 교육사업비의 90.7%인 1,155억 6천 1백만원이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는 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원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사업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바, 동 사업들의 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육복지지원사업비 편중의 문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일반재원과 목적지정재원을 모두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033억 7천 3백만원이 증가한 2조 2,711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누리과정지원,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등의 교육복지지원사업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23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조 4,238억 2백만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의 62.7%로 교육복지지원사업 편

중이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담당관이 언급하였듯이 2023년 유치원 무상급식 준비를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바(유치원안심급식환경구축: 3억 6백만원/노후조리기구 교체및확충: 13억 7천 1백만원), 향후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지원사업의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고정지출의 경직성 경비 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시행되면 이를 임의적으로 축소·폐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교육사업비 중 이와 같은 특정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재정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청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라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는 교육사업비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의 관계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비간 형평성 있는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6] 2018~2021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사업비	3,493,752,717	2,204,643,755	2,604,710,446	2,271,131,367
시설비	832,706,165	1,064,352,075	877,378,394	822,312,395
시설사업비 비율	23.8%	48.3%	33.7%	36.2%

3) 지방채원리금 상환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2,54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현재 교육청은 2015년 발행한 ‘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의 2,687

억 6천 3백만원과 2016년 발행한 ‘교육환경개선’ 2,174억 1천 4백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방교육채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상환 등 재정안정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이율이 높은 지방교육채부터 조기상환하기 위해 증액편성 한 것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표-5] 2021년 지방교육채 상환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발행액	이율	2020년말 잔액	'21년 운용 계획						'21년말 잔액 (예정)
				원금상환			이자상환			
				본예산	추경예산(안)	계	본예산	추경예산(안)	계	
합 계	486,177		316,177	9,878	251,604	261,482	5,675	2,514	8,189	54,695
'15.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2.267 (고정)	98,763	9,878	88,885	98,763	2,239	996	3,235	0
'16.교육환경개선	217,414	1.58 (고정)	217,414	0	162,719	162,719	3,436	1,518	4,954	54,695

4)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증액사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증액사업은 1,780억 5천 4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1조 1,072억원의 16% 규모입니다.

[표-6]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증액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주관부서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추경증감액	비고
합계				178,054,463	
1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우선지원	혁신교육지구운영	300,000	신규사업
2	교육혁신과	스마트교육지원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	414,200	

3	유아교육과	누리과정지원	유아학비부대경비	9,890,697	
4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	3,439,000	
5	초등교육과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향상지원	1,650,000	
6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인사관리	562,800	
7	중등교육과	스마트교육지원	원격교육지원	60,083,170	
8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학원건전운영을위한지도단속	750,000	
9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학교(급)방역등지원	3,007,500	
1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신규사업)	1,371,390	
11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재산관리일반운영비	446,813	
소계				81,915,570	
12	정책안전기획관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안전관리강화	3,070,900	
13	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유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운영	3,998,916	
14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3,054,000	
15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육성종목지원	선진운동부육성	2,000,000	
16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관리	학교감염병관리	22,589,280	
17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20,676,817	
18	교육연구정보원	스마트교육지원	학교무선환경구축	37,390,680	
19	교육연구정보원	정보보안관리	정보화관리	1,903,500	
20	학교보건진흥원	학교급식관리	급식실작업환경개선및 안전관리	1,454,800	
소계				96,138,893	

○ 이 중 신규사업은 혁신교육지구운영(교육후견인제 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의 819억 1천 5백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국가재정법」 제89조와¹³⁾ 달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규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제89조와 추가경정예산 제

13)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경우 [표-7]과 같이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표-7]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¹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성할 것

2020년 결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편성 된 사업 중 ‘유아교육교육력제고’의 경우 불용률이 16.1%였으며, ‘안전인프라구축’ 사업은 불용률이 21.6%였고, ‘사립유치원코로나19유치원운영한시지원’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45.1%에 이르는 등 신규사업 불용률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¹⁵⁾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대규모의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1) 예산담당관

가) 계약제교원인건비(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75~177pp)

① 사업 개요

- 동 예산은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법정

14)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1.3 참고.

15)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참고.

부담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의 인건비로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증원 계획에 따른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증가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계약제교원인건비	264,774,445	27,008,750	291,783,195	266,851,711
보수	222,227,047	21,580,232	243,807,279	220,824,709
법정부담금	21,987,398	2,241,108	24,228,506	24,357,002
퇴직금	15,170,000	2,715,000	17,885,000	16,280,000
맞춤형복지비	5,390,000	472,410	5,862,410	5,390,00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약제교원인건비는 보수 215억 8천만원, 법정부담금 22억 4천 1백만원, 퇴직금 27억 1천 5백만원, 맞춤형복지비 4억 7천 2백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70억 9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함에 있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303, 2021.2.24.)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공립 초등학교 저학년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기간제교원의 한시적 임용에 따른 교원 증원 항목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통보한데 따른 조치입니다(총 증원 543명 중 초등: 428명 증원, 중등 115명 증원).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인건비와 관련해서 [표-8]의 ‘2016~2020년도 계약제교원인건비 결산내역’ 을 살펴보면, 연평균 2,352억 7천 8백만원의 예산현액에 대해 2,241억 1천 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7% 인 111억 5천 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8] 2016~2020년도 계약제교원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6	203,999,350	200,337,619	3,661,731	1.8
2017	222,016,859	213,576,036	8,440,823	3.8
2018	247,112,269	223,306,028	23,806,241	9.6
2019	246,410,314	237,068,141	9,342,173	3.8
2020	256,851,711	246,306,847	10,544,864	4.1
평균	235,278,101	224,118,934	11,159,166	4.7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도 이러한 결산흐름을 반영한다면 2,917억 8천 3백만원의 약 4.7%인 137억 1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교육청이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활용 필요성에 따라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측면도 있으나, 그동안의 계약제교원인건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변동추이를 고려할 때 불용예산액의 약 2배 규모인 270억 9백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은 다소 과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를 증액편성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인원 증가요구를 단순히 반영하기보다는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재원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 행정관리담당관

가) 정보화기획(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7~189p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비는 지능정보화전략 로드맵을 구축하여 변화된 정보인프라를 통한 미래 서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정보화기획	70,884	497,876	568,760	80,900
소프트웨어	58,560	-	58,560	74,100
정보화교육	2,924	△2,124	800	800
정보화사업실무협의회	2,400	-	2,400	-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500,000	500,000	-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7,000	-	7,000	6,000

-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보화기획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으로¹⁶⁾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지능정보화를¹⁷⁾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평가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계획의 수립 및 학교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교육분야의 정보화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16) ISP는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으로 공공부문이나 대규모 기관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활용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는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고,¹⁸⁾ 동 시행계획에서는 초·중등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 및 ICT 기반 교수·학습·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별도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¹⁹⁾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나라장터를(G2b) 통해 조달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2~3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필연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사업의 연내집행가능성, 시급성 등의 관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참여협력담당관

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9~221p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비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	9,089,383	2,949,215	12,038,598	6,733,83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9,089,383	2,949,215	12,038,598	6,733,838

18) 교육부, 2021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2021.3

19)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관련해서 [붙임3] 참고.

-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 신청 학교 수의 증가로(전년 1분기 대비 76개교→826개교) 인해 기정예산보다 29억 4천 9백만원의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청은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154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학교 감소로 인하여 제3,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7억 3천 5백만원을(56.5%) 감액하여 사업비를 67억 3천 3백만원으로 감액조정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 8천 2백만원이 불용되었는바, 비록 1분기에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학교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표-11]과 같이 그동안 불용액 과다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청 학교 수가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기정예산 대비 32.4%를 증액 한다는 것은 자칫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표-11] 2017~2020년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7	24,884,338	22,292,885	2,591,453	10.4
2018	22,478,015	20,029,048	2,448,967	10.9
2019	19,424,086	19,090,479	333,607	1.7
2020	5,937,169	4,254,813	1,682,356	28.3
평균	18,180,902	16,416,806	1,764,096	9.7

- 따라서 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추 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의 방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교육정책국

가) 학교혁신기획운영(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91p)

① 사업 개요

- “학교혁신기획운영” 사업은 서울형혁신학교의 운영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혁신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A+B)	최종예산
계	35,875,564	45,200	35,920,764	17,347,880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281,200	△204,000	77,200	99,750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34,307,030	249,200	34,556,230	15,874,150
학교통합지원센터운영 지원	668,354	-	668,354	746,280
학교혁신일반화지원	310,300	-	610,300	619,020
학교혁신지원센터운영	8,680	-	8,680	8,680

- 동 사업 중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사업은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의 리더십 강화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학교관리자들의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관리자 리더십 우수 사례 공유, 타 학교와의 정보 교류,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관리자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학교관리자 학습공동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²⁰⁾

20)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2021). 2021 학교혁신과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장·교감 리더십 강화 사업 운영.

올해 총 787명(134개팀)이 초·중등 교장·교감 교원학습공동체 신청한 것을 계기로 2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1년 본예산에 학교관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업(학교관리자 토론회, 협의회,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1억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3.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사업의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239.4%인 2억 4천 9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인 시급성, 보충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의 증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2] 2021년 본예산 학교관리자 토론회 관련 예산

(단위:천원)

사업 내용	산출 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토론회·컨퍼런스 시설임대	600,000원×8회+5,000,000원×2회	14,800,000	3,360	100,640
토론회 자료집 인쇄	18,000원×4회×280부	20,160,000		
행사용품비	500,000원×10회+1,120,000원×1식	6,120,000		
컨설팅·토론회 운영수당	500,000원×80명	4,000,000		
강사료	{(160,000원+90,000원)+(14,000원×35매×2시간)}×4명×10회	13,920,000		
토론회 협의회비	25,000원×100명×6회	15,000,000		
컨퍼런스 협의회비	25,000원×300명×2회	15,000,000		
지원단·네트워크 등 운영 협의회비	25,000원×30명×20회	15,000,000		
	총 계	104,000		

- 특히, 일반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있다 하겠으나, 학교관리자 학습공동체는 리더십 사례 공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이외에 특별한 학습 과제가 없다는 점에서 자칫 내부 구성원의 격려성 사업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바,

교육청이 학교관리자의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350p)

① 사업 개요

- 기초학력향상지원은 서울시 초등학생들에게 기초 학습(3R: 읽기, 쓰기, 셈하기)과 교과 학습에서 요구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부진에 대한 심리·정서적 요인을 파악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A+B)	최종예산
계	11,620,474	1,659,537	13,280,011	3,031,983
교사의기초학력보장 활동지원	-	1,650,000	1,650,000	-
서울학습도움센터운영	145,174	△7,226	137,948	-
초1,2기초학력 협력교사지원사업	7,384,280	-	7,384,290	-
초2기초학력보장 집중학년제운영	690,500	-	690,500	957,100
학습상담운영	3,400,520	16,763	3,417,283	2,074,883

- 교육청은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내에 “교사의 기초학력보장 활동지원(키다리쌤)”을 신규사업으로 포함하면서 본예산(116억 2천만원) 대비 114.3%(16억 6천만원) 증가한 132억 8천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금번 추경에 포함된 신규사업으로 기초학력보장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 500여명을 지정하여 지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기초학력지원 사업은 ‘기초학력향상지원’ 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학교기타운영비)’ 로, 지난 3년간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되어 2021년에는 2019년 예산액 대비 271.5%(98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155억 5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매년 기초학력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존 교사를 포함하여 시간제계약직, 봉사직 인력” 이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2020년에는 학습상담운영을 위한 학습상담연구원 및 학습상담사 등을 증원함과 아울러, 초2 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대비 180.2%(45억 9천 6백만원)를 증액하였고, 2021년에는 협력강사²¹⁾ 지원 사업²²⁾ 신설을 위해 2020년 대비 150.6%(52억 2천 9백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표-13] 자체예산 기초학력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현황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세세부 사업	구분	예산액		
			2021년	2020년	2019년
		계	15,554,474	10,324,983	5,729,308
교수학습활동 지원	기초학력향상 지원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145,174	-	123,103
		초1~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	7,284,280		-
		초2 기초학력보장 집중학년제 운영	690,500	1,317,100	-
		학습상담운영	3,400,520	1,714,883	567,205
		협력교사제 운영	-		
학교재정지원 관리	학교기타운영비	기초학력책임지도제	3,934,000	7,293,000	5,039,000

21)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수학수업 시간 내(주당 2시간)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기초학력 지원.
 22) 협력강사 지원 예산은 72억 8천 4백만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협력강사 등 2021년에 도입된 지원 인력 확대 사업들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학력 지도를 신청하는 교사들에게 지도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또 다른 유형의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 인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원이 시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추정계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검증하거나,²³⁾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나,²⁴⁾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 및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현재 학교 내 교사들의 기초학력 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초2 기초학력보장 집중학년제 운영을 추진 중이며,

무엇보다 기초학력 지도는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별도의 기초학력 지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몇몇 교

23) 교육부(2020).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는 전년보다 증가함.
- 초등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성취수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019년보다 증가한 추세를 고려할 때, 초등 역시

【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연도	3수준(보통학력) 이상						1수준(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9	82.9 (0.54)	61.3 (0.94)	72.6 (0.82)	77.5 (0.90)	65.5 (1.24)	78.8 (0.98)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2020	75.4 (0.76)	57.7 (1.01)	63.9 (1.1)	69.8 (1.14)	60.8 (1.27)	76.7 (1.07)	6.4 (0.4)	13.4 (0.59)	7.1 (0.43)	6.8 (0.52)	13.5 (0.75)	8.6 (0.64)

- ※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 3. 은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

24) 서울교육연구정보원(2021).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 분석결과, 동일집단 대상으로 중2에서 중3으로 변화할 때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중위권 비율 감소).

사들의 개별 지도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기초학력 지원 사업들의 진행 현황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지도 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스마트기기 지원 - 원격교육지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84p, 821p)

① 사업 개요 및 예산안

- “원격교육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수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교육 체계의 디지털 전환과 학생·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사업은 SW교육 등 미래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교육청은 서울시 초·중·고등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교육지원” 사업에 본예산 대비 11082.5%(600억 8천 3백만원) 증가한 60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사업에 본예산 대비 578.7%(206억 7천 7백만원) 증가한 249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A+B)	최종예산	
원격교육지원	계	547,080	60,083,170	60,630,250	
	블렌디드수업 및 교사연수모형개발	81,750	60,083,170	60,164,920	-
	블렌디드수업사례나눔	89,320	-	89,320	-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336,010	-	336,010	-
	초등학생원격교육환경 만족도조사	20,000	-	20,000	-
	학부모원격교육환경 만족도조사	20,000	-	20,000	-
학교정보화기	계	4,319,000	20,676,817 ²⁵⁾	24,995,817	45,321,780
	학교교육용PC보급(노후PC교체)	4,318,600	-	4,318,600	5,804,000
	학교교육용PC보급사업 추진경비	400	-	400	-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A+B)	최종예산
기 보 기 관 리 비	교육용노후PC교체	-	-	39,517,500
	학교교육용클라우드 시스템구축사업추진경비	-	-	280
	학생스마트기기보급	-	20,676,817	-

②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스마트기기 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

-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스마트단말기, 무선AP, 충전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384개 중학교에 총 27,811대의 스마트기기를 제공하였으며,

[표-14] 교육부의 스마트기기 제공 현황(2018년~2021년)

학교설립	학교수	스마트기기 제공 평균 수	개별 학교별 스마트기기 최대 지원 수
공립	276개교	75대	502대
사립	105개교	67대	426대
전체	381개교	73대	502대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2022년까지 120개 중등학교에 스마트단말기 62대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연도	구축학교(수)	구축 의무사항	비고
2016	초·중학교(4교)	- 무선AP : 2대 이상 - 스마트단말기 : 31대 이상	학교별로 24,500천원씩 지원
2017	초·중학교(13교)	- 무선AP : 2대 이상 - 스마트단말기 : 31대 이상	학교별로 24,000천원씩 지원

25) 206억 7천 7백만원 중 106억 6천 7만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며, 100억 1천만원은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임.

2018	초·중학교(12교)	- 무선AP : 2대 이상 - 스마트단말기 : 31대 이상	학교별로 25,000천원씩 지원
2019~2022	중등학교(120교)	- 무선AP : 4대 이상 - 스마트단말기 : 62대 이상	학교별로 47,000천원씩 지원
합계	초·중학교 149교 (2022년 기준)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금을 364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한바 있으며, 2021학년도에는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신설된 입학준비금(333억 4천 8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중1 신입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가 제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선 현재 교육청의 다른 사업들에서 추진되는 스마트기기 지원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수량을 확립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막대한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이것을 본예산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스마트기기 지원 검토

- 2021년 5월에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학생 학습 환경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중학생은 학생 수 대비 100%,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은 최대 50%까지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원격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1년에 스마트기기를 구입²⁶⁾하여 2022년에 서울시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기로 하고,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2021년에 스마트기기를 구입하여 2020년에 스마트기기 보유율 20%미만 학교

26) 학교별 희망 기종 수요 조사 후 공동 구매 예정

중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 PC 보급 사업과는 달리²⁷⁾ 장기적으로 BYOD²⁸⁾ 사업을 도입하여 “학생 개인 소유”의 스마트기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표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상기한 바와 같이 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인 사업 방향과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15]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지원 증장기 계획(안)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20%로 보급	학교 희망에 따라 10% 범위에서 추가 보급 ※누적 30%	학교 희망에 따라 10% 범위에서 추가 보급 ※누적 40%	학교 희망에 따라 10% 범위에서 추가 보급 ※최대 50%까지	학교 희망에 따라 10% 범위에서 추가 보급 ※최대 50%까지
중학교	학생 수 대비 20%로 보급	학생 수 대비 34% 지원 (예: 중1)	학생 수 대비 33% 지원 ※누적 66% (예 중1~2)	학생 수 대비 33% 지원 ※누적 100% (예 중1~3)	[BYOD 일부 도입]
고등학교	학생 수 대비 20%로 보급	학교 희망에 따라 10% 범위에서 추가 보급 ※누적 30%	[BYOD 일부 도입] 학교 희망에 따라 10% 범위에서 추가 보급 ※누적 40%	[BYOD 일부 도입] 학교 희망에 따라 10% 범위에서 추가 보급 ※최대 50%까지	[BYOD 전면 도입]

- 더욱이 교육부에서도 2018년부터 추진되었던 ‘학교 스마트기기 도입(5차) 사업’을 2021년에 종료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학생 1인 1기기 제공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도별로 필요한 학교에 한하여 기기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27) 학교 교육용 PC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으며, 매년 노후PC 교체 사업도 시행되고 있음.
28) BYOD(Bring Your Own Device): 개인 소유의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를 학습(업무)에 활용하는 것

[표-16] 다른 시·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희망자 모두	희망하는 학교에 2025년까지 1인 1기기	21%	-	고등학교 30대	고등학교 30대 및 교육청 300대	16%	1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35% ※ 2023년까지 1인당 1기기	20%	-	22%	25% ※ 2025년까지 1인당 1기기	12% ※ 연차적 1인당 1기기	25%

○ 이처럼 교육부²⁹⁾ 및 교육청³⁰⁾에서는 2020년에 들어서야 디지털화된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이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급하게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에게 스마트기기 보급에만 집중할 경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지원된 스마트기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미래 교육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모델 및 우수 사례들을 개발한 이후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지원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중학교 모든 교사들에 대한 스마트기기 지원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원격교육지원” 사업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면서 학생들과는 달리 교사의 경우는 중학교 전체 교사 및 기간제교사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 교육부에서는 2020년부터 AI교육기반조성, AI교육선도학교운영, AI교육중심고등학교, 교육대학원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30)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블렌디드 수업모형 개발 및 관련 교사 연수 등을 추진 중임.

[표-17] 중학교 교원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 편성 현황

사업 내용	산출 근거	예산액(천원)	비고
중학교 교원 기기 구입 지원비	610,000원*18,470명=	11,266,700	기간제, 강사 포함

- 그러나 스마트기기는 수업활동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활용하는 교육 기기인 만큼 학생보다 교사들에게 우선하여 미리 스마트기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현재 모든 교과 수업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든 교사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기보다는 교사들의 전공 교과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바,

“원격교육지원” 사업의 교원 대상 스마트기기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평생진로교육국(체육건강문화예술과)

가) 학교감염병관리(사업별 설명서 584p)

① 개요

- ‘학교감염병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이후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인력 추가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기정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B)	최종예산
계	998,417	22,575,780	23,574,157	33,657,377
감염병대응훈련	47,850	△13,500	34,350	3,763
감염병예방협의체운영	11,760	-	11,760	14,760
학교방역지원	75,000	-	75,000	-

감염병발생예경보제	-	-	-	2,400
감염병발생통계분석 및 소식지제작보급	-	-	-	11,400
방역물품지원 (국고보조금)	-	-	-	1,306,000
건강상태자가진단 시스템운영	714,807	-	714,807	-
방역기기설치	50,000	-	50,000	-
방역물품지원	-	-	-	14,279,130
방역활동강화	-	22,589,280	22,589,280	9,296,608
감염병예방방역물품지원	50,000	-	50,000	-
방역관련사업지원	49,000	-	49,000	-
열화상카메라구매지원	-	-	-	5,421,000
학생지도용교직원마스크 지원	-	-	-	394,092
유치원의료인력지원	-	-	-	1,047,440
학교보건지원강사운영	-	-	-	1,880,784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학교감염병관리 사업으로 225억 7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주요 증액 사유는 방역활동강화 예산으로 225억 9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감염병대응훈련 예산이 본예산 대비 1천 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방역활동강화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 및 예방 수칙 준수 지도를 위한 인력 지원 예산입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방역활동강화’ 사업 예산 225억 9천만원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을 대상으로 4개월(9월~12월) 동안 총 2,127교에 3,486명의 방역활동 지원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³¹⁾

31) 산출기초: 1명(12,000원×5시간×27일)×4개월 = 6,480,000원

[표-18] 2021년도 학교급별 방역인력 예산 현황

(단위, 교, 명, 천원)

구분	학교수	지원인원	지원액	비고
유	768	768	4,976,640	교당 1명
초	603	1206	7,814,880	교당 2명
중	388	776	5,028,480	
고	320	640	4,147,200	
특수	32	64	414,720	
각종	16	32	207,360	
계	2,127	3,486	22,589,280	

[표-19] 방역활동강화 사업 2020년과 2021년 비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기간	2020.8~2020.12(기간중 4개월)	2021.9~2021.12
대상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706개교 1,412명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2,127개교 3,486명
소요예산	9,296,608천원	22,589,280천원
산출기초	1명(65,840원×25일)×4개월 = 1,646,000원	1명(60,000원×27일)×4개월 = 1,620,000원

- 이러한 방역활동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예산은 지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2억 9천 7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68억 2천 7백만원이 지출되고 24억 7천만원(26.6%)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 동 사업은 전년도의 경우 국·공·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총 706개교에 1,412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원 인력의 중도퇴사 등의 사유³²⁾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도 1인당 소요되는 산출기초가 전년도(1,646,000원)와 금년(1,620,000원)간 차이가 적은바,

32) 지원인력의 중도퇴사 사유: 타 기관 취업, 근무조건(노동강도, 근무시간), 기타사유 등

지원 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방역인력의 중도퇴사 방지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집행잔액의 과도한 발생은 금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0] 2020년도 방역활동강화 사업 방역인력비 지급 현황

(단위: 개, 천원, %)

구분	대상 학교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국립 중·고등학교	5	65,840	56,105	9,735	14.8
공립 중·고등학교	392	5,161,856	3,898,794	1,263,062	24.5
사립 중·고등학교	309	4,068,912	2,871,778	1,197,134	29.4
계	706	9,296,608	6,826,676	2,469,932	26.6

○ 이와 함께 하반기 백신접종의 확대로 교육청내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추진되는 등 방역활동 지원 인력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불용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방역인력의 중도퇴사 방지방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최근의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교육행정국

가) 교실증축 및 학교신설(사업별 설명자료 646p, 650p)

① 개요

○ ‘교실증축’은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실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학교신설’은 유아 공교육 기회의 확대 및 초·중학교 학생 배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B)	추경예산 (A+B)	최종예산
계	108,452,631	47,315,639	155,768,270	139,830,619
교실증축	11,617,945	15,986,945	27,604,890	38,325,432
학교신설	96,834,686	31,328,694	128,163,380	101,505,187

- ‘교실증축’ 사업은 공립 유·초·중학교의 교실증축을 위해 본예산에 116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에는 유치원 6개원, 공립초 4개교, 공립중 3개교 등 총 13개교의 교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설계비로 159억 8천 7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신설’ 사업은 공립학교 신설을 위해 본예산에 968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에는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27개교에 대한 보전금 및 시설비 등 313억 2천 9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신증설 사업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재정투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이후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바, 공연초병설유치원 신설 등 11개 학교신증설 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 그러나 이들 11개 사업 중 공연초병설유치원 신설은 지금 진행중인 체육관 증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 역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금번 추경안 10억 4천 6백만원 중 8억 3천 6백만원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칭)송과유치원 신설은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금번 추경안

에 증액된 17억 5천 5백만원 모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가칭)은로유치원 신설은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2021년 8월 착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40억원 중 2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가칭)거암초 신설, 가칭)거암중 신설, 덕수고 이전등의 사업은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철근 등 자재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75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외에도 금번 추경안 편성된 영동초병설유, 고척초, 경인중, 영동중, 원촌중 교실증축 사업예산은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금년도 공사의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52억 5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동 추경안에서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 사업에 대한 적절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추경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긴급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편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추경안에는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개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각 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표-21] 학교신증설 사업 중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감액이 필요한 사업현황

사업명	대상	기정예산	추경증감	추경예산	비고
학교신설	공연초병설유	209,000	1,046,000	1,255,000	선행사업 지연(체육관 증축 2022.1. 준공 예정)으로 2022년 집행가능액 감액
학교신설	(가칭)송파유	431,576	1,754,520	2,186,096	유치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공사예정(2022.1. 이후)으로 학교와 협의하여 2022년 집행가능액 감액

학교신설	(가칭)은로유	1,425,837	4,000,000	5,425,837	행정절차 수행 및 설계 지연(제로에너지 인증 등)으로 2021.8. 착공이 가능하여 2022년 집행가능액 감액
학교신설	(가칭)거암초	22,228,652	4,500,000	26,728,652	현재 공사 진행중이나 전국적인 철근품귀 현상 등으로 자재수급이 어렵고, 고레미콘 8.5제토요일일휴무 등으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축공사비 공정률에 따라 중간정산 됨으로 2022년 집행가능액 감액
학교신설	(가칭)거암중	20,441,354	3,000,000	23,441,354	
학교신설	덕수고이전		3,000,000	3,000,000	
교실증축	영동초병설유		1,603,101	1,603,101	공사중 재원유아 배치대책 관련 학교 협의 등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감액
교실증축	고척초		1,900,000	1,900,000	기 확보 예산(2020년 이월액)으로 일부 공사 발주하고, 금회 추경 요청 예산을 2022년 본예산 반영 후 설계변경 실시예정(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결과 반영)
교실증축	경인중		797,871	797,871	기 확보 예산(2020년 이월액)으로 일부 공사 발주하고, 금회 추경 요청 예산을 2022년 본예산 반영 후 설계변경 실시예정(대지 협소로 법정 추가대수 필요,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등)
교실증축	영동중		140,000	140,000	2021년 6월 현재 설계 진행중이며 올해 지급액(선급금)분만 편성, 2022년 설계 완료 예정으로 최종 정산 시 필요금액(기성금) 편성 예정
교실증축	원촌중	1,577,524	2,130,000	3,707,524	2021년 6월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올해 지급액분(선급금)만 편성, 2022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최종 정산 시 필요금액(기성금) 편성 예정

나) 그린스마트스쿨(사업별 설명자료 712p)

① 개요

- ‘그린스마트스쿨’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와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단위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계획’ 및 ‘실행계획’을 통해 5년 동안 18.5조원을 활용하여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시설을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추진 대상 학교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5개년 기본계획(‘21년~’ 25년)을 수립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과 예산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예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분담율은 7:3으로 정해졌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67억원을 확보하

기 위해 자체재원 422억원을 선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교부금의 관리 등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B)	추경예산 (A+B)	최종예산
계	2,669,000	39,531,000	42,200,000	-
그린스마트스쿨지원 시도교육청 분담금	559,000	-	559,000	-
사전기획용역(사립학교)	-	400,000	400,000	-
사전기획용역	1,760,000	720,000	2,480,000	-
설계용역비	-	38,411,000	38,411,000	-
타당성조사용역및수수료	350,000	-	350,000	-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본예산에 시도교육청 분담금과 사전기획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등으로 26억 6천 9백만원이 기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안에는 사전기획용역을 위한 사업비 1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설계용역비 384억 1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에 포함된 설계용역비 384억 1천 1백만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대상인 50개교의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만 실시설계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각종 투자심사, 그리고 사전기획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사전절차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비는 금년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 전액 불용이 예상되므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관리·운영되어

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금번 제301회 정례회에 제출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384억 1천 1백만원을 기금의 수입재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비가 해당기금으로 전출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이 기금전출금(820-01)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추경안에는 건설비(420)로 편성되어 있는바, 해당기금으로의 전출을 위해서는 동 추경안의 세출항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	세부사업	사업내역	성립전 우선사용	우선 확정일
합 계 (98건)			284,226	
국 보 조 금	과 학 교 육 과 정 운 영 내 실 화 교육행정기록물관리	발명교육 활성화	37	05-04
		지방이양사무 지원	44	04-13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44	02-18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9	03-04
		웹툰 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35	04-28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확충	90	02-05
		에코 스쿨 조성	1,300	03-12
		특수학교(급) 방역 등 지원	1,203	04-15
		온라인 튜터	9,147	05-03
		소 계 (9건)		
특 교 부 금 (국 가 시 책)	과 학 교 육 과 정 운 영 내 실 화 교과자료개발보급 교육과정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기관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방과후학교운영 스마트교육지원 예산관리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지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25	03-09
		인공지능 초등 수학수업 지원시스템 현장 지원	41	05-03
		인공지능 활용 초등 수학수업 지원	20	02-23
		한-신남방 온라인 역사 교류 활성화 지원	80	05-0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역연계	100	03-29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구축 운영	200	03-29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 체계 구축	217	04-22
		시·도 교육청 평가	27	02-23
		대학수학능력 시험	7,982	02-16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66	03-04
		학교 무선 환경 구축	2,590	04-13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용 활성화	37	05-04
		맞춤형 ICT연계 교육 서비스 구축 운영	248	05-04
		초·중·고 IT 관리 활용 지원	350	05-04
		취약 계층 학생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410	05-04
		K-에듀파인 응용 S/W 운영 및 중앙 총괄 센터 운영	108	04-22
		AI활용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운영	764	04-27
		방과후 놀이 유치원	7	01-27
		미래형 학부모 놀이 교실	18	01-27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운영	72	04-13
특 교 부 금 (국 가 시 책)	조 직 및 성 과 관 리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특 성 화 고 교 육 내 실 화 지 원 학 교 보 건 관 리 학 교 환 경 위 생 관 리 학 력 평 가 관 리	조직분석 진단	18	02-04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운영	427	02-25
		시·도 교육청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75	03-11
		고교학점제 대국민 이해도 제고	25	03-24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운영	1,159	03-26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과서(PDF파일)제공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 지원	31	04-22
		특수 건강 진단 실시	309	03-05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518	04-16
교육환경 정보시스템 통합 및 클라우드 이전	26	04-27		
수능모의 평가 지원			430	02-16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성립전 우선사용	우선 확정일	
	학 력 향 상 지 원	학업성취도 평가	643	02-16	
		학업성취도 평가	123	04-22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 확 대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시·도 특색사업)	7	05-04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1,396	04-13	
	학 생 생 활 지 도 지 원	학교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강화	17	05-03	
		학교 산업 안전 관리 가이드 라인 마련·배포	9	05-03	
	소 계 (36건)			18,575	
특 교 부 금 (지역현안)	학 교 시 설 증 개 축	강당 겸 체육관	1,800	03-12	
		기타 증축	286	03-12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급식 시설 개선	1,209	03-12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891	03-12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냉난방 개선	8,191	03-12	
		바닥 개선	3,324	03-12	
		방수 공사	447	03-12	
		외벽 개선	2,768	03-12	
		창호 개선	4,382	03-12	
		화장실 개선	3,577	03-12	
		기타 사업	571	03-12	
		냉난방 개선	368	04-13	
		냉난방 개선	651	04-20	
		창호 개선	132	04-20	
소 계 (14건)			28,597		
특 교 부 금 (재해대책)	학 교 보 건 관 리	학교 방역인력 지원	12,923	03-18	
	소 계 (1건)			12,923	
광 자 치 단 체 금 전 입 금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마을결합형 학교 공간 시설 개선지원	800	04-06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혁신교육지구 운영(마을결합형학교지원)	500	04-06	
	기 타 교 육 비 지 원	입학준비금	364	02-19	
	스 마 트 교 육 지 원	스마트교육 지원	55	04-13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급식시설개선(부분)		155	04-13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디렉터)	138	03-18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3,937	04-22	
	냉난방 개선		160	04-13	
	도장 공사		355	04-13	
	바닥 개선		109	04-13	
	방수 공사		150	04-13	
	외부환경 개선		525	04-13	
	전기시설 개선		96	04-13	
	창호 개선		25	04-13	
	기타 사업		3,765	04-13	
	학 교 시 설 증 개 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교육경비보조)	4,723	04-26	
		나래학교 편익시설 조성 지원(교육경비보조)	1,000	05-03	
	학 교 시 설 증 개 축	강당 겸 체육관(교육경비보조)	400	04-27	
	학 교 폭 력 예 방 지 원	학교 CCTV교체	29	04-26	
		학 기 중 급 식 비 지 원	무상급식(1~2월)	4,322	01-25
	무상급식(처우개선비인상분)		78	02-18	
	무상급식(3~8월)		103,068	03-18	
	무상급식(인건비추가분)		82	04-13	
소 계 (23건)			124,836		

(단위 : 백만원)

재원	세부사업	사업내역	성립전 우선사용	우선 확정일		
기자치단 전입금	초체금	기타교육비지원	입학준비금	8,325	02-19	
			입학준비금(추가분담금)	501	05-03	
		도서관운영지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4	04-27	
		민간투자사업상환	BTL 정부지급금(언주초)	695	03-10	
			BTL 정부지급금(개봉초, 신도림고)	109	03-24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 경비	1,514	04-22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마을 생태 체험 과학 교실	25	04-13	
		학기중급식비지원		무상급식(1~2월)	2,880	01-25
				무상급식(처우개선비인상분)	52	02-18
				무상급식(3~8월)	68,710	03-18
				무상급식(인건비)	54	04-13
소 계 (11건)			82,869			
기지원 전입금	타금	IT 활용 교육 지원	AI 교육 선도 학교 운영	706	05-03	
		소 계 (1건)			706	
기지원 전입금	타금	학력평가관리	전국연합학력평가	3,005	02-16	
			전국연합학력평가	671	03-26	
		학생생활지도지원	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135	04-26	
소 계 (3건)			3,811			

2020년 집단임금협약 주요 내용

I 교섭 경과

- (2020.6.15.) 노조 임금교섭 개시 요청 및 임금요구안 제출
- (2020.7.9.) 집단임금교섭 실시 결정 및 경남교육감 교섭 대표 선정
- (2020.7.29.~9.17) 임금교섭 절차협의 6회
- (2020.10.8.) 임금교섭 개회식 및 절차합의서 작성
- (2020.10.14.~11.19) 실무교섭 5회
- (2020.10.22.~11.2) 노조-중노위 조정 신청(10.22), 조정 회의(10.28) * 조정 중지 결정
- (2020.11.26.~12.22.) 실무교섭 6~9차 교섭
- (2020.12.23.) 노사 4:4 교섭, 사측에서 노조에 협약(최종)안 제시
- (2020.12.24.) 노조에서 사측 교섭단에서 제시한 협약안 수정 요구
- (2021.1.15.) 2020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
- (2021.1.22.) 2020년 임금협약 체결식 (경상남도교육청)

II 임금협약 체결 주요 내용

- 공통급여체계직종(유형 I, II)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비고
기본급	- 유형I 2,023,000원 - 유형II 1,823,000원	- 유형I 2,040,000원 - 유형II 1,840,000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월 17,000원 인상 (유형 I 0.84%, 유형II 0.93%)
급식비	월 13만원	월 14만원	협약 체결월부터 적용(21.1)	월 1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100만원	120만원 (설추석 각 60만원)	협약 체결일 이후 설·추석부터 적용	연 2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50만원	55만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연 5만원 인상

- 별도 급여체계 적용 직종 * 변경항목 외 공통 직종과 동일
 - 영어회화전문강사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비고
명절휴가비	연 50만원 (설추석 각 25만원)	연 80만원 (설추석 각 40만원)	협약 체결일 이후 설·추석부터 적용	연 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 30만원	연 50만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연 20만원 인상

- 초등스포츠강사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비고
기본급	월 1,984,140원	월 2,001,140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월 17,000원 인상
정기상여금	-	연 30만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신설

- 다문화언어강사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비고
기본급	월 1,823,000원	월 1,840,000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월 17,000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	연 55만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신설

- 특수운영직군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비고
기본급	월 1,823,000원	월 1,840,000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월 17,000원 인상

- 교육복지전문인력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비고
기본급	월 2,516,610원(기관) 월 2,016,070원(학교)	동일 격려금* 80,000원 2021.3.1. 재직자 지급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금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산입 X
직무수당	월 20,000원	월 30,000원	21 회계연도부터 적용	월 1만원 인상

※ 단, 전국학비연대회의가 2021.1.31.까지 1유형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급을 1유형으로 하면서 교육복지조정자(기관근무자)에게 월 50만원의 기관근무수당 지급 (이 경우 직무수당은 인상하지 않음)

● 기타 - 전산실무사

변경 항목	지급액	지급요건	적용시기
전산자격수당	월 5만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 ① 통합직종 도입일 이전 입사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정보통신, 정보기술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③ 각 학교에서 전산 업무를 분장받아 직접 수행	21 회계연도 부터 적용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부서명 : 행정관리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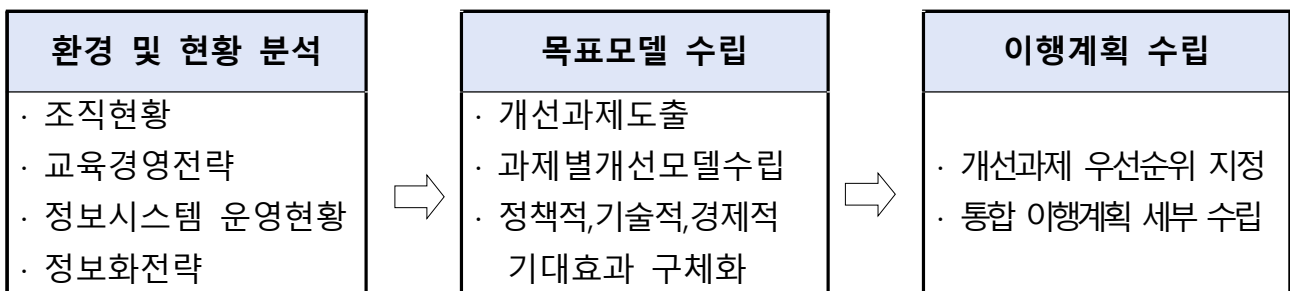
1. 필요성 및 목적

- ❖ 지능정보화전략 로드맵을 구축하여 변화된 정보인프라를 통한 미래 서울 교육정책 추진 필요
 - 정보화 관련 전 업무를 분석, 최신의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현재의 업무 체계를 변화시킬 청사진 확보(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 1항)
 - 학교 현장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 1항: 3년 단위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2.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지능정보화 전문화, 세분화, 재구조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평가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류 체계 구축 미흡
- 교육부 중장기 계획 수립(1996~)이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서울시교육청의 차별화된 중장기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미추진

3. 추진 방향



- (현장 인터뷰) 본청 정책 주관부서, 업무추진부서, 교육연구정보원 및 연구 우수학교에 대한 인터뷰 실시
- (부서별 요구사항 분석) 학교 및 부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법, 제도개선 분석) 지능정보화 관련 법, 제도개선 사항 분석
 - ☞ 예시)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수립
- (개선과제 협의) 개선 과제 도출 협의

4. 사업 개요

- 서울미래교육방향과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에 부합한 현실적인 전략 계획 및 지능정보화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진
- 향후 서울교육 지능정보 시스템의 신규 구축과 운영 사업 부실화 등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
-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서울교육 발전방향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 지능정보화 사업단계의 내실화 및 투자관리 효율화를 도모한 사업 추진
 - ☞ 현재 분산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포함
- RPA*,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시스템통합과 같은 신기술 도입 적용 분야 발굴 및 방안 제시
 -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로 ‘위라벨’ 실현
- 선진기술의 추이와 정보처리 기술의 표준화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활동을 통한 구축 방안 마련
- 효율적인 학교 정보화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이후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통합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

- 계약 방법 및 예산
- 사업 명: 서울시교육청 중장기 지능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5억원(부가세, 조달수수료, 제안서평가 비용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평가 실시)

5. 기대 효과

-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으로 투자효율성(실행과제도출 및 이행계획수립) 제고
- 계획된 미래 서울교육 지능정보화 업무추진 청사진 확보
- 최신의 정보기술 적용 및 현재의 업무체계를 변화시킬 자료 확보